



미청구 재산 소유자의 권리장전 2007

목적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의 유일한 목적은 (가) 상실 및 방치된 재산을 적법한 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나) 이 같은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개인의 사적 이권에 유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주정부에 보고되는 재산의 종류

주정부에 이관될 수도 있는 재산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국한하지는 않는다: 대여금고 계정, 대여금고, 현금화하지 않은 급여 수표, 자기앞 수표, 업자 발행 수표, 유가증권, 배당금, 보험 수익금, 유가증권 예금 및 기타 종류의 무형 재산.

캘리포니아주 민사소송법 제 1510 조~제 1521 조는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일정 기간 활동이 없으면 이후 그 재산을 주정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계좌의 경우, 은행 기관은 계좌 소유자가 3년 이상 다음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좌의 휴면 재산을 법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 1) 예금의 증액이나 감액, 이자 수표 현금화 또는 이자 기입용 통장이나 그와 비슷한 예금의 증거 제시
- 2) 예금에 관하여 해당 은행 기관과 전자적으로 또는 서면으로 교신
- 3) 그 밖에 해당 예금에 대하여 메모 또는 해당 은행 기관의 기타 기록으로 증명이 되는 관심을 표명

통지

휴면 재산을 주정부에 보고하기 전, 은행 또는 금융 기관 및 기타 사업체는 해당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될 예정임을 소유자에게 알리는 통지를 법에 따라 반드시 발송해야 한다. 이 통지는 해당 재산이 주정부에 보고되는 시점에서 최소한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전에 발송되어야 한다. 이 통지에는 해당 소유자가 해당 계좌를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거나 소유자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소유자가 해당 양식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해당 기관으로 반송하면 해당 재산은 주정부로 이관되지 않는다.



Controller Betty T. Yee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

Unclaimed Property Division

아울러, 회계감사관도 각 소유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 해당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될 수도 있음과 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의 이름 및 그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지 않게 하는 데 필요한 연락처 정보를 알려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휴면 재산을 접수하면 회계감사관은 미청구 재산법에 따라 이를 관리한다. 주정부 회계감사관과 관련 대리인 및 직원은 민사소송법 제 1500 조 이하 미청구 재산법에 따라 주정부로 이관된 휴면 재산의 소유자 모두에게 부여되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촉진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권리 및 보호

- 1) 각 신청인은 정중한 대우를 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 2) 소유자는 자신의 휴면 재산을 미청구 재산부에 언제든지 무료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청구 안내 및 양식은 회계감사관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입수할 수 있다:
http://sco.ca.gov/upd_form_claim_korean.html
또는 다음 부서에서 직접 구할 수 있다.
Unclaimed Property Division
P.O. Box 942850
Sacramento, CA 94250-5873

또는 다음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다: 1-800-992-4647
- 3) 주정부로 이관된 휴면 재산 또는 그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각 순이익은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상속자가 영구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목적상, 소유자는 해당 재산이 주정부로 이관되기 전 그 재산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가졌던 자, 그의 상속자 또는 그의 법적 대리인으로 법률적으로 정의한다.
- 4) 미청구 재산부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안에 청구인에게 청구 접수 사실을 알리는 서면 또는 전자 확인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같은 확인서는 해당 청구에 대한 지급이 접수 30 일 안에 승인된 경우 발송하지 않는다. 이 경우, 청구인은 접수증 대신 지급 증서 또는 청구 승인 서신을 받는다.
- 5) 미청구 재산부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 일 안에 각 청구를 심사하여 청구를 승인하거나, 청구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서류를 요청하거나,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거부되는 경우 청구인에게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Controller Betty T. Yee

California State Controller's Office

Unclaimed Property Division

- 6) 미청구 재산부가 청구를 반려하여 청구인에게 추가 증거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요청 서류 또는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미청구 재산부는 우선 청구인에게 연락하여 해당 청구건을 논의하고 필요 사항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한 해당 청구를 재차 반려하여 추가 증거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는다.
- 7) 해당 재산이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 받은 주정부 감사관에 의하여 매각되었다면, 소유자는 매각 순이익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 8) 그러나 미청구 재산부가 관리하도록 이관된 휴면 재산 중 명백히 상업적 가치가 없는 재산은 최소한 18 개월간 보관 및 보호되어 그 소유자에게 자신의 재산을 청구할 모든 타당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재심사 신청 권리

청구가 거부되거나 추가 증거서류 보완을 위해 반려된 소유자는 거부일 또는 청구 반려일로부터 30 일 안에 회계감사관의 법무실에 연락하여 청구 거부에 대한 비공식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청구인은 비공식 재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미청구 재산부에 자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모든 증거서류를 제공하려고 타당한 모든 노력을 기울였어야 한다.

회계감사관의 법무실은 비공식 재심사 요청을 접수하는 대로 파일을 검토하며, 심리 일정을 잡고 추가 증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법적 검토가 완료되면 법무실은 해당 청구가 승인되었거나 미청구 재산부의 거부 결정이 재확인되었음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비공식 재심사 관할 부서의 주소는 다음과 같다.

Legal Office
 State Controller's Office
 300 Capitol Mall, Suite 1850
 Sacramento California 95814

결정에 대한 사법적 조치

회계감사관실의 결정에 불복하거나 청구 접수 후 180 일 안에 미청구 재산부로부터 아무런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은 아무 카운티나 도시 및 검찰청 사무소가 있는 카운티의 상급 법원에서 자신의 청구를 입증하는 소송을 개시할 수도 있다. 소송은 해당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90 일 안에 또는 회계감사관이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면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70 일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재산 소유자 옹호관실

휴면 재산 소유자에게 부여된 상기 권리 및 보호를 증진하고 미청구 재산부의 대민 즉응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미청구 재산 소유자 옹호관 제도가 설립되어야 한다. 옹호관은 미청구 재산부를 상대로 자신의 청구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없었던 청구인을 지원하는 일을 하며 다음 직무와 책임을 맡는다.

- a) 청구인들로부터 청구 현황 검토 요청을 받는다.
- b) 청구인을 도와 청구 문제 해결에 청구인이 사용 가능한 모든 행정적 구제수단을 촉진하고 행사한다.
- c) 옹호관의 검토 결과를 청구인에게 전달하고, 청구 해결 관련 정보 또는 청구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청구인이 사용 가능한 추가 법적 구제수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d) 취급 사건에서 대두된 문제를 요약하고 고객 서비스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운영상의 변화를 권고한다.
- e) 청구 절차를 완료한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고객 서비스 추가 강화 방법에 관한 의견을 수집한다.
- f) 미청구 재산 프로그램의 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법률적 개혁에 관하여 회계감사관 및 집행 실무진과 협력한다.